

1. 개정이유

자동차용 내압용기 재검사와 장착검사 기술인력의 자격과 직무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검사품질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내압용기 자동차의 운행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인력 자격 및 직무 기준 명확화(안 별표2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령 제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0 제2호 검사원란의 자격란에 다목과 검사원란의 직무란 3)을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내압용기검사

구분	자격	직무
검사책임자	자동차검사대행자의 내압용기검사원으로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내압용기재검사·내압용기장착검사 업무 총괄
검사원	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원으로서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내압용기재검사·내압용기장착검사 실시와 적합여부 판정

같은 별표 주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내압용기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란 내압용기재검사·내압용기장착검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

6. 관련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리, 기계제작, 기계저장설비·설치, 자동차, 금속재료 직무분야를 말한다.

7. 내압용기재검사는 검사책임자와 검사원으로 구성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